##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2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이상식·조 국·어기구

박지원 • 정진욱 • 민형배

이병진 • 윤준병 • 이재관

박홍배 • 이언주 • 김영호

손명수 · 염태영 · 장경태

박해철 • 부승찬 • 김재원

의원(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		
원) ①・② (생 략)	원)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		
	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퍼		
	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u>③</u> ~ <u>⑥</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7}$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 ④ (생 략)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	5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			
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u>제3항</u>	<u>제4항</u>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			
화단지 조성·운영", "특화단지			
의 원활한 운영"또는 "특화단			
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			
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			
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 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